

2026년 제1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

법제처 공고 제2026-25호

법제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6일
법제처장

1. 선발예정인원 (1개 분야, 총 4명)

지원코드	채용 분야	선발인원	근무예정부서(근무지)
인턴A	법제지원	4	국가법령정보센터(세종) 법제지원총괄과(세종) 행정규칙심사정비팀(세종) 법령용어순화팀(세종)

※ 근무예정부서는 근무 희망 부서, 지원서류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

가. 근무조건

- (신 분)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
- (계약기간) '26. 4. 13.(예정) ~ '26. 9. 30.
- (보 수) 월 2,156,880원 ※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
- ※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(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)
- (근무시간) 주 5일, 40시간
- (후생복지)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나. 주요 업무 내용

지원 코드	채용 분야	근무예정부서	담당 예정 업무
인턴A	법제 지원	국가법령정보센터	·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개선 및 모니터링단 관리 업무 지원 ·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업무 지원 ·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원
		법제지원총괄과	· 법령입안지원 관련 입법례 검색 및 입안지원 완료 안건의 입법 현황 모니터링 등 업무 지원 · 『법령입안·심사기준』 개선을 위한 입법례 및 판례 검색 등 지원 · 법령 제명 약칭(안) 마련 관련 유사 사례 검색 등 업무 지원
		행정규칙심사정비팀	· 제·개정 법령 내 행정규칙 위임 사항 안내 지원 · 존속기한 미설정 및 기한 도래 행정규칙 관리 지원 · 행정규칙 정비 과제 발굴 및 관리, 그 밖의 서무 업무 지원
		법령용어순화팀	· 한눈보기 콘텐츠 개발 등 지원 · 법령·행정규칙 기 발굴과제 관리업무 지원

※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

2.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

가. 응시자격요건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① 「청년기본법」 상 청년(19세 이상 34세 이하)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
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「병역법」 제26제1항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
▶ 군복무기간 1년미만 : 1세 /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 / 2년이상 : 3세 연장

②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※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는 근로계약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③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

- 법제처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

-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(2회)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자

※ 단, '23~'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

※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**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**(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'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'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경력증명서 등)를 포함하여 함께 제출)를 제출해야 하며, **누락·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**

※ 고용보험 이력 중 **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** 해당 이력이 '**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**'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경력증명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함

- 법제처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자

※ 가족 채용 제한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름

- 「법제처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제6조의2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

< 국가공무원법 >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가점요건: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※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

- 「법제처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제9조의7에 따른 가점(加點) 대상자[만점(100점)의 10% 또는 5% 가산]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(국가보훈부 상담센터 ☎1577-0606)
- ※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3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할 때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서류전형 기준[지원서(만점 100점), 가점요건(만점의 5% 또는 10%)]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
- ※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‘정책제안서’를 제출받은 후,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※ 정책제안서 주제 : 청년(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을 말함)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(법령 조항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함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- (평가요소) ①소통·공감, ②헌신·열정, ③창의·혁신, ④윤리·책임
- (평가방식) 개별면접 / 지원서, 정책제안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·응답
- (최종합격자 결정)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‘상’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(‘상’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)하되,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
4. 시험 일정

-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: 2026. 2. 26.(목) 09:00 ~ 3. 9.(월) 18:00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 : 2026. 3. 20.(금)
- 면접시험일 : 2026. 3. 27.(금)
 - ※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
- 최종 합격자 발표일 : 2026. 4. 6.(월)
 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, 채용 포기, 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제출일시 및 방법

- 제출기간 : 2026. 2. 26.(목) 09:00 ~ **3. 9.(월) 18:00**
- 제출방법 :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 내 2026년 제1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제출
 - ※ 청년인재 DB(www.2030db.go.kr) 가입 필요

나. 제출 서류

구분	제출 서류	비고
필수 제출 서류	응시원서 1부	• 별지서식 제1호 활용. 자필서명 필수
	지원서 1부	• 별지서식 제2호 활용. A4 2매 이내 작성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	• 별지서식 제3호 활용. 자필서명 필수
	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	• 별지서식 제4호 활용. 자필서명 필수
	공정채용확인서 1부	• 별지서식 제5호 활용. 자필서명 필수
	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	• 별지서식 제6호 활용. 자필서명 필수
	주민등록초본 1부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본이 기재 되도록 발급 •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되도록 발급 ※ (잘못 제출된 예) 초본 내 정보 일부 블라인드(x), 주민등록등본(x), 병적증명서(x), 열람용(x)
	가족관계증명서 1부	• 본인, 부, 모가 기재되도록 발급
	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(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)	• 근로복지공단 발급. 전체 이력 인쇄 ※ '[참고]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' 확인 요망 •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'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'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경력증명서 등)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
해당자 제출 서류	가점 요건 관련 증빙서류	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국가보훈부 발급) 등 증빙서류 사본

※ 제출 서류 관련 주의사항

가. 자필서명 필수 서류는 반드시 자필서명하여야 하며, **텍스트로 서명을 입력한 것은 자필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음**

나. 서류에 의해 **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인정**될 수 있음

다. 파일명은 **"청년인턴응시원서_응시자 본인 성명"**으로 기재하며, **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(스캔)로 제출**(모아찍기 금지)

(예시) 청년인턴응시원서_홍길동.pdf

라. 정책제안서의 경우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제출 안내 예정

6. 유의 사항

-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, 해당자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,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의 문의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(☎ 044-200-6530)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

- ①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' 접속
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

근로복지공단

Korea Workers' Compensation & Welfare Service



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,
근로복지공단

대표 홈페이지

근로복지공단 관련 소식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홈페이지입니다.

바로가기

고용·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

고용·산재보험 관련한 각종 민원을 신청(산고)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바로가기

근로복지넷

각종 근로자 복지사업 (생활안정자금, 임금채권사업 등)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바로가기

퇴직연금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/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바로가기

공단 병원

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이트입니다.

바로가기

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-0075(통화로 알선자 부담) Copyright © 2023 by 근로복지공단 All Rights Reserved.

- ② 개인 → 일반근로자 선택 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

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.

사업장

사무대행

의료기관

개인

☒ 일반근로자

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·예술인 ☐ 산재근로자 ☐ 대리인(간이대지급금/심사청구/구상금협의조정/최초요양급여신청)·유족

주민등록번호

123456

.....

☒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

공동인증서 로그인

간편인증 로그인



-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(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) 또는 간편인증(주민등록번호)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 - 간편인증 사업장: 카카오, 통신사PASS, 한국정보인증(삼성PASS), KB국민은행, NHN페이코, 신한은행, 네이버, 토스,뱅크샐러드, 하나은행, 농협, 드림인증
 -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편인증 화면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인증서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여러개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.(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60분 동안 화면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)
- 고용·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발급하시려면 개인 > 일반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·예술인 선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토탈서비스는 모바일 환경(모바일 웹, 앱)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③ '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' 선택

근로복지공단
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
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**개인**

[일반근로자] 박정연 님 민원접수/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/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

자주 찾는 서비스

토털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

개인

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**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** 개인별 부과고지보 형료 조회 One-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심사청구서 작성

공지사항 + **알림창**

new

연간 정기작업으로 인한 토탈서비스 일시중지 계획 알림(2025.01.04)
2024-12-31

new

산재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(재)인증 결과 알림
2024-12-26

new

(겨울철 비상진료 한시적용-대상기관)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 안내
2024-12-20

new

(겨울철 비상진료-한시적용)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재보험 적...
2024-12-20

new

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
2025-01-02

new

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
2025-01-02

2025년 최저임금
시간급 10,030 원
월 환산액 2,096,270 원
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문의 사항은
국민콜센터
1350
최저임금위원회

④ 보험구분 중 '고용' 선택 → 조회구분 중 '상용' 선택 → 조회

⑤ 직종포함여부 '예' 선택 → '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전체 이력 인쇄)' 신청 선택

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Home > 증명원 신청/발급 > **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**

메뉴숨김 화면인쇄 **화면인쇄 안내**

+ 마이메뉴 추가

*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.

본 자료는 고용·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,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·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· 보험구분 ☐ 산재 ☒ **고용**

· 조회구분 ☒ **상용** ☐ 일용

조회

이력내역서 발급

직종포함여부 ☒ **예** ☐ 아니오

이력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[자격관리 상세이력]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.

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개별사업장)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고용/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※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

☐ 산재보험 ☒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근로자용/피보험자용)					
발급번호	0000-20 -01 5	발급일자	20 년 01월 일	접수번호	0000-20 -7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30일	
조회기간	전체 (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)				
일련번호	직종명(코드)	사업장 명칭	취득일/전근일	상실일	비고
1	정부·공공 행정 사 무원(025)	국무조정실	20 -09-		근로자
2					근로자
※ 본 자료는 산재보험·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/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,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,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-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) -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「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-국민소통-민원/조회-증명원 진위확인」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. 20 년 01월 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					

※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‘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’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경력증명서 등)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

응시원서

1. 지원분야					
응시번호		지원코드	인턴A	채용분야	법제지원
2. 인적사항					
성명		생년월일		성별	
주소 (도로명)	(우)				
휴대전화			전자우편(E-Mail)		
3. 가점요건					
※ 아래의 내용 중 응시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✓ 표기하십시오.					
☐ 취업지원대상자(5%) ☐ 취업지원대상자(10%) ☐ 해당 없음					
4. 근무 희망 부서					
1순위		2순위		3순위	
4.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					
중앙행정기관명	실제 근무지	근무기간		합산 기간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성명 (서명)					

- 응시원서 작성 전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응시번호 칸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가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가점을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응시원서 작성요령

1.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2. 응시원서는 아래의 《작성요령》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《 작 성 요 령 》

- ① **응시번호** :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고, 빈 칸으로 둡니다.
- ② **지원코드 및 모집분야** :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를 기재합니다.
(예) 지원코드 : 인턴A 채용분야 : 법제지원
- ③ **성명, 생년월일, 성별** : 해당 칸에 빠짐없이 기재합니다.
(예) 생년월일 : 2001. 10. 15. 성별 : 여
- ④ **주소** : 현재 거주하는 곳(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)을 정확히 기재합니다.
- ⑤ **전자우편·(휴대)전화** :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- ⑥ **가점요건** :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.
- ⑦ **근무 희망 부서** : 공고문에 기재된 근무예정부서 중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를 순위별로 기재하되, 동일한 부서를 여러 순위에 중복하여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⑧ **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** :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명, 실제 근무지(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소속기관명, 중앙행정기관 본부에서 근무한 경우 부서명), 근무기간을 기재합니다. 근무 이력이 없는 경우 “해당없음”으로 기재합니다.
- ⑨ **날짜, 성명, 서명** : 작성한 날짜, 응시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, 서명 부분에는 자필서명합니다. 서명 부분에는 반드시 자필서명하여야 하며, 텍스트로 서명을 입력한 것은 자필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지 원 서

응시번호		지원코드	인턴A	채용분야	법제지원
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휴대전화 이메일

◎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

- 작성요령
 -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
 -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,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
 -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

◎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

- 작성요령
 -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
 - 학교명, 자격증, 시험 성적(어학 등) 등 언급 없이 행동과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
 -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

◎ 문제 해결 경험

- 작성요령
 - 학교, 아르바이트,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서술
 -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,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
 -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

◎ 소통 및 협업 능력

- 작성요령
 -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
 -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

◎ 기대하는 점 및 각오

- 작성요령
 -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
 -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

※ 주의사항

- **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**(글자크기 : 11, 글꼴 : 함초롬바탕, 줄간격 : 120%, 글자색 : 검정)
- **출생지, 출신 학교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**
- 작성요령, 주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응시번호는 빈 칸으로 두고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 기재
- 주의사항 삭제 후 서류 제출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	년 월 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성명 :

(서명)

법제처장 귀하

공정채용확인서

작성자 인적사항

- 출생월일: 월 일
- 성 명: _____

※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확 인 사 항	해당여부	
	예	아니오
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?	☐	☐
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?	☐	☐
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?	☐	☐
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,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)촌 이내 / 근무부서 : 이름 :		

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 년 월 일

(서 명)

법제처장 귀하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법제처	채용방법	공개경쟁채용	채용직위(직급)	청년인턴
	채용사유	2026년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		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			
	연락처	생년월일	년	월	일	채용 예정일 26. 4. 13.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